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2-8P

제출년월일 : 2002. .

제 출 자 : 김제시장

1. 개정이유

○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등을 규정하고, 청소자립도 유지를 위한 봉투판매 가격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명령의 신설 (안 제4조의2, 제4조의 3)

○ 청결유지명령의 이행강제 규정 신설 (안 제4조의 4)
- 과태료 부과 처분

○ 종량제 규격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판매가격 인상 (별표7)

○ 타지에서 전입시 구거주지에서 구입한 봉투의 환불·교환 규정의 신설(안 제13조 제6항)

○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운영규정의 신설 (안 제17조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

○ 청결유지책임제 조례개정 준칙(안)

○ 지방물가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수집·운반·보관·처리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를 "수집·운반·보관·처리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 적용하며,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 다음에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의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의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중 "퇴비화 및 사료화 등 재활용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탈수 또는 건조시켜 배출하여야 한다."를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처리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흰색"을 "흰색(반투명)"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5항중 [별표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7]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의 판매가격(제11조제5항 관련)

구분	용량(ℓ)	판매소에 공급가격(원)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원)
일반용	5	70	80
	10	130	140
	20	250	270
	50	610	660

제13조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거주지 이전등의 사유로 타자치단체에서 사용후 남은 잔량에 대해서 환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7의 소비자 가격 기준에 의해 환불·교환하여 줄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을 "(공공지역 및 농촌지역에 관한 적용)"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쓰레기종량제가 어려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 대표자를 종량제 관리책임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 ---------- ---------- ---------- 수집·운반·보관·처리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 적용하며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4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의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의3(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의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및 사료화 등 재활용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탈수 또는 건조시켜 배출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처리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생략) ②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계약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④ (생략)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흰색(반투명)----------. ③---------- ---.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 ⑤ (생략) <신설>	제1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거주지 이전등의 사유로 타자치단체에서 사용후 남은 잔량에 대해서 환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7의 소비자 가격 기준에 의해 환불·교환하여 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② (생략) <신설>	제17조(공공지역 및 농촌지역에 관한 적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쓰레기종량제가 어려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 대표자를 종량제 관리책임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7]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의 판매가격(제11조제5항 관련)	[별표7]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의 판매가격(제11조제5항 관련)

구분	용량(ℓ)	판매소에 공급가격(원)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원)
일반용	5	45	50
	10	91	100
	20	172	190
	50	445	490

구분	용량(ℓ)	판매소에 공급가격(원)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원)
일반용	5	70	80
	10	130	140
	20	250	270
	50	610	660